

특별기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대한민국 심리사 법제화를 통한 심리서비스 전문화: 근거와 고려사항” 특별호 발간에 부쳐

장 은 진

(제 50대 한국심리학회장 /
보건복지부 발주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연구책임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22년은 1946년 설립된 한국심리학회의 76년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심리사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미 한국심리학회는 1973년부터 임상심리전문가 7인과 상담심리전문가 6인이 배출된 이래, 2022년 현재 각 분과학회 최상위 전문가가 4,716명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심리학에 기반한 제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1997년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국가전문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 자격에 관한 모법인 ‘심리사’관련 기본법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서 심리전문가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의 공통 업무 위주의 역할을 주로 함으로써 심리사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여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인지행동치료 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법의 부재로 수가를 부여할 수 있는 의료보험 비용 청구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로 인한 가족 구조의 급속한 변화나 약화, 공동체 기반의 지지체계 약화,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지난 30년 가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의 오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사회통합 지수들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심리서비스, 심리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이나 훈련, 수련을 받지 않은 무자격 인력 혹은 부적격한 인력들도 국민들에게 심리상담 등 심리서비스를 실시함에 따

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비윤리적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는 2020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를 수행하였고, 심리서비스 관련 문헌 조사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사 법제화를 통한 심리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연구 절차나 결과를 한국심리학회 회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편집위원회의 협조 하에 본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호 제목과 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심리사 법제화를 통한 심리서비스 전문화: 이슈와 고려사항”의 특별호를 통하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사 법제화와 관련된 여러 이슈와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의 논문에서는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심리사 자격제도, 공공 정신건강 심리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리서비스 현황을 관련 법령들을 통해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리서비스 관련 법률 제정 및 국제 수준의 국가전문자격심리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사업의 확대, 특히 국민의 심리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의 심리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 심리사 제도를 활용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체계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는 1996년 OECD 회원국이 된 한국의 정신건강 체계 및 제도에 대한 첫 권고안 내용과 (O'Connor, 2013), OECD와 WHO 등 국제 정신건강 정책에서 드러나는 정신건강 인력 양성 및 심리사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심리서비스 인력 운용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과 행복감 등 심리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자격 심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효과적인 심리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인력으로 심리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OECD 소속 국가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심리사 자격 기준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응용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와 국제심리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에서 선포한 정신건강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심리사 핵심역량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 비전문가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등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갖춘 심리사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심리사법안이 규정한 심리사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논의”에서는 한국심리학회(2020)가 수행했던 연구보고서에 따라 국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과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및 유럽심리사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 심리사 자격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심리사는 OECD 수준의 전문성과 유능성을 갖추고 동시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발의된 심리사 법안에서도 심리사는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야 할 것인데, 인간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담당하려면 핵심 역량과 유능성이 보장 될 만큼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심리학회는 특별호에 실린 논문들이 심리사법안의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심리사’ 자격/면허는 이미 국제심리연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수련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에서도 그에 맞는 질적인 전문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심리사 법제화’가 더욱 실제적으로 진행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전문자격 ‘심리사’가 자살예방과 더불어 국민의 심리건강과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증진’과 ‘성숙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